경리인코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주식투자가 부동산이나 현금과 함께 중 요한 재산의 구성요소를 이루게 되었으며, 또한 주식투자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다. 주식의 취득에서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 다.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없다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은 없다. 보통 일반 개인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주식에는 취득세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납부했던 취득세를 지분비율만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주식의 50%를 초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에 거래수수료만 내면된다. 증권거래세(0.43%)도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납부하는 것이지, 취득주주는 내지않는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부담하는데 증권사마다 약간의 수수 료율의 차이는 있다.

주식보유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통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금융예금의 이자와 같이 주식에는 배당소득을 받게 되는 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떼이게 되는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

2022 · 08 · 24 www.eAn\$e.com **7**

용된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액면가 합계액이 1천8백천만원 이하인 장기보유(1년 이상)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조특법 §88의4).

배당소득에는 현금배당 · 주식배당 그리고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 주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의제배당 등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이 2천만원 초과시는 종합합산 과세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권상 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변칙적 상속 증여 방지차원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코스닥상장 2%)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 즉 대주주는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 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라도 장외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94①(3)가목 나목).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최초로 출자해 3년 동안 보유한 후 양도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조특법 §14).

이렇게 주식의 양도에 있어 적용되는 세금은 주식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기업 대주주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104).

상장 ·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경우는 10%(대주주는 20%, 25%)가 적용된다. 그 외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게 된다.

구 분			세 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이하 20%
	중소기업외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초과 25%
		1년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